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제제도의 성격과 변화양상 고찰

백중현 · 임광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혁신정책연구팀

A study on IT Equipment Certification Regulation System

Jong-Hyun Paik, Kwang-Sun Lim

ETRI IT Technology Innovation Research Team

E-mail : jhpaik@etri.re.kr

요 약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인증규제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인증규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키워드

전기통신, 인증, 규제정책, 정부규제

1. 서 론

국민들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할 다양한 규약들이 존재한다. 이런 규약들은 통신망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기타 통신기기 상호간에 적절한 송·수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규약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목적의 다양한 규약들 중 일부는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조사나 통신사업자 자율에 의해 준수된다. 여기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기술기준이라 하며 정부는 제조사등의 설비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규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인증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 국가의 전기통신 인프라에 부과되는 고유의 규율로서 여겨져 정부규제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내적으로는 최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과 관련된 주요 정부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규제 역시 통신사업자 간 자율에 의한 표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WTO등에 의한 국가간 기술장벽협정(Technical Barrier Treaty :TBT) 및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상호 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 등이 전개되면서 개별국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인증규제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규제론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인증 규제의 의의와 성격을 조망해 보고 향후 정부의 인증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코자 한다.

II. 정부규제론 관점에서의 인증규제

1. 정부규제의 유형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규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1][2][3].

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경제행위자들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규제로서 특히 이것이 문제로 되는 것은 개별 산업에의 정책이다. 좁은 의미의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1>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